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2나20116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2나20116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합5504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 변호사 이유진, 최원석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솔 담당 변호사 신현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우

변론종결 2022. 6. 8.

판결선고 2022. 6.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합5504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8줄부터 3쪽 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경영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합중국인 C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두고 있다.

나. C은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액’란의 각 돈을 차용하였다.

순번	차용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원)	이자율	지연이율
1	2008. 7. 3.	2012. 7. 3.	3억 원	연 12%	연 24%
2	2008. 8. 21.	2012. 8. 21.	2억 원	연 12%	연 25%
3	2008. 11. 14.	2011. 11. 14.	25억 원	연 14%	연 25%

다. 이후 C은 A에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일부 대여 원리금을 만기일자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2.경 C을 상대로 잔존 대여 원리금 중 일부인

2,416,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476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4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3.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21.경 C을 상대로 다시 잔존 대여금 채권인 300,934,2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전41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00,934,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다항의 지급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한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액’란의 각 돈을 차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C은 2008. 4. 2. A과 ‘I’의 위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225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표의 삽입을 위한 여백)

번	차용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원)	이자율	지연이율
	2008. 4. 2.	2012. 4. 2.	150억 원	연 12%	연 25%
	2009. 8. 28.	2011. 8. 28.	25억 원	연 12%	연 25%
	2010. 8. 6.	2012. 8. 6.	30억 원	연 13.5%	연 25%

바. 이후 I는 A에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일부 대여 원리금을 만기일자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8245호로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8. C에게 “C은 원고에게 225억 원의 범위에서 44,287,192,236원 및 그중 20,680,669,942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C은 위 각 지급명령 및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7. 6.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1억 2,9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7. 6. 15.경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3쪽 2줄의 “2.”항을 “3.”항으로 고친다.

○ 3쪽 6줄의 “받았으나”부터 8줄의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받았으나, 2018. 9. 20.경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고 C이 이 사건 회원권을 처분하여 위 압류가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2017. 12. 6.경 또는 2018. 9. 20.경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

○ 4쪽 10줄부터 11줄까지의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 9,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5쪽 7줄의 “2017. 12. 6.경” 뒤에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를 추가한다.

○ 5쪽 13줄부터 2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원고가 2018. 9. 20.경 수령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에는 피고의 상호가 지워져 있으나, 피고의 상호인 ‘B 주식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직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피고의 주소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까지 확인이 된다. 또한 원고는 C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J법무법인 2008년 제1550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5426호로 C의 E 주식회사(대표이사 C)에 대한 급료 및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상당의

금전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을 37억 5,0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2. 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당시 피고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E 주식회사의 존재 및 그 대표이사가 C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8. 9. 20.경에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즉 무자력인 C이 2017. 6.

15.경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을 1억 2,9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 및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21. 4. 29.경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현황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 직인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35426 사건의 제3채무자 상호와 유사한 ‘H’를

발견하였고, 이에 기업정보조회를 통해 피고를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갑 제15호증).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및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계약서상 직인의 상호를 통해 피고를

얼마든지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추가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절차일 뿐 원고는 위

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당시 이미 양수인이 피고로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법인등기부열람을 2021. 4. 29.경 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6쪽 2줄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승규, 판사 김동완, 판사 배용준

별지